

생활보호 안내

이 안내책자는
생활보호제도의 구조나 신청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모르는 점이 있는 분은
부담없이 각 구 보건복지센터 사회원호과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소리 패총 PR 대사
카소리-누 (かそり-ぬ)

목 차

페이지

1. 생활보호란	1
2. 생활보호 신청 (신청절차)	2
3. 생활보호의 결정방법	3
4. 생활보호의 종류	5
5. 생활보호를 받게 될 경우 다음 수속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7
6. 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고정경비 삭감 절차	8
7. 보장되는 것(권리)	8
8. 현금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9
9. 지켜야 할 것(의무)	10
10. 이럴 때는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11. 이런 경우에는 생활보호로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3
12. 의료기관 등에 다니고 싶을 때는	14
13.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을 때는	15
14. 민생 위원의 역할	16
15. 지구 담당원 (케이스 워커) 의 역할	16
16. 요보호 세대 대상 부동산 담보형 생활자금 대출제도에 대해	17
17. 기타	17
18. 구 사회원호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	18
19. 생활보호제도의 원칙	19

보건복지센터 일람

레이와 7 년(2025 년) 4 월판

카소리 패총 PR 대사
카소리ー누 (かそりーぬ)



1. 생활보호란

이 제도는 일본국 헌법 제 25 조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근거로 하여 국가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해 그 곤궁 상황에 따라 필요한 혜택을 제공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고 그 세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나 저축이 없어져 생활이나 입원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국가가 정한 최저한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나 의료비 등의 지원을 합니다.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은 생활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잠시 동안은 법에 의한 보호 등에 준하는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은, 적법하게 일본에 체재하고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영주권자」, 「정주권자」 등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대상이 됩니다.



카소리 패총 PR 대사
카소리ー누 (かそりーぬ)

2. 생활보호 신청(신청절차)



상 담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생활보호를 받고 싶은 분은 보건복지센터에 와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병 등으로 본인이나 가족분이 오지 못할 경우, 전화 등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14 일 이 내 에 결 정 특 별 한 경 우 30 일 이 내

생활보호신청

신청할 의사가 있는 분은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 신청서를 전해 드리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정에 의해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명백히 급박한 상황인 경우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생활보호를 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제출

신청 접수 후 다음 서류를 전달해 드립니다.
주요 서류 : 동의서 • 수입신고서 • 자산 상황 등 신고서 •
연금관계조서 • 부양의무자의 상황조사 • 집세
지대 증명서 등

조사 · 심사

보건복지센터의 지구 담당원(케이스워커)이 여러분의 자택을 방문하거나 은행이나 생명보험회사 등을 조사하여 생활이 곤란한 상황이나 생활보호를 받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지 조사 · 심사합니다.

결 정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생활보호 결정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이 통지서에는 부조(생활 보조금)의 종류와 부조금액 등이 적혀 있습니다.

【생활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생활보호 신청 각하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이 통지서에는 생활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 결정이 늦은 경우나 통지된 내용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지구 담당원(케이스워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생활보호의 결정방법



카소리 패총 PR 대사
카소리-누 (かそりーぬ)

(1) 자택 방문

신청이 완료되면 보건복지센터 지구 담당원(케이스워커)이 여러분 댁을 방문하여 현재 생활상황이나 과거 생활 경력 등을 묻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거나 알리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비밀은 다른 분에게 알려지지 않으니 안심하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산 관계 조사 및 친족에 대한 조회

신고 외에 은행 및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조사, 지원 및 교류가 기대되는 부양 친족에 대한 조회를 실시합니다만, 생활보호 결정에 필요한 조사이니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결정

조사가 끝나면 여러분 세대가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개시), 받을 수 없는지(각하)를 결정하고 원칙적으로 신청이 있는 후 14 일 이내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은 최장 30 일 이내)에 서면을 보내드립니다.

(4) 생활보호 구조 (필요 여부의 판단)

원칙적으로 생활보호의 필요 여부나 수급할 수 있는 금액은 동거하고 있는 세대 전체를 단위로 해서 판단합니다.

국가가 정한 최저 생활비와 여러분 세대의 모든 수입을 비교하여 최저 생활비보다 수입이 적을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최저 생활비는 가족의 연령이나 인원수 등에 따라 다르며 부조비의 내용에 대해서도 세대의 상황 및 모든 수입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최저생활비 (국가가 정한 기준)**란 의식 등의 생활비, 집세 등의 주거비, 의무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나 급식비, 개호비, 의료비 등에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더한 것입니다.

※ **수입**이란 여러분의 가구의 모든 수입 (급여·수당·상여금·송금·연금·보험금 등)입니다. 이 중 일하면서 얻은 수입은 일정한 공제액이 인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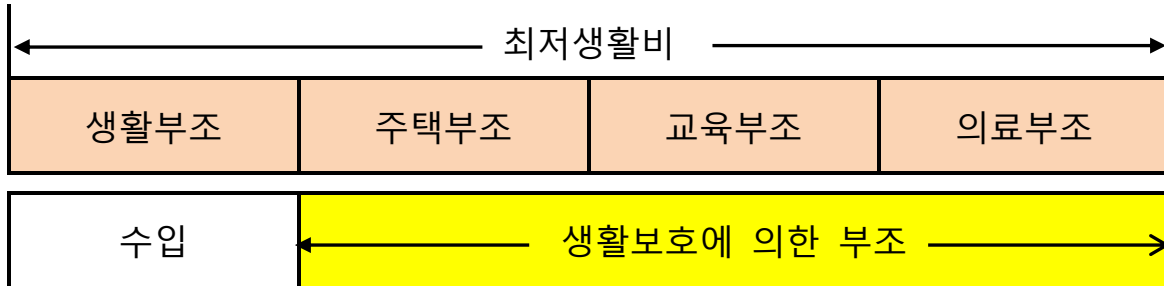
【최저생활비와 수입과의 대비】



카소리 패총 PR 대사
카소리-누 (かそり-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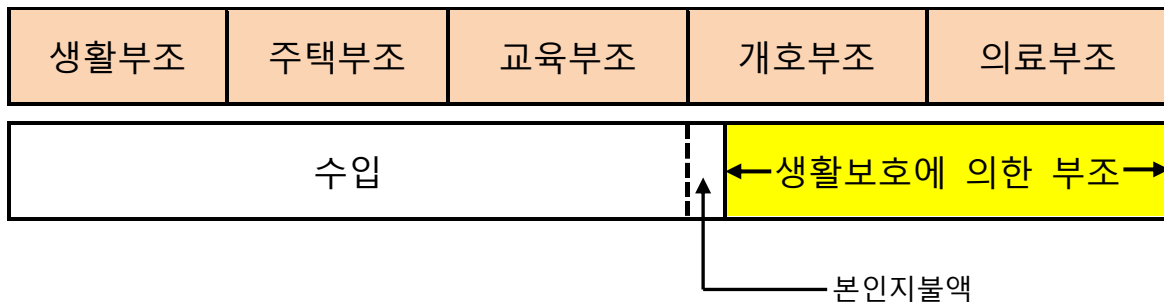
1.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 수입이 최저 생활비를 밑돌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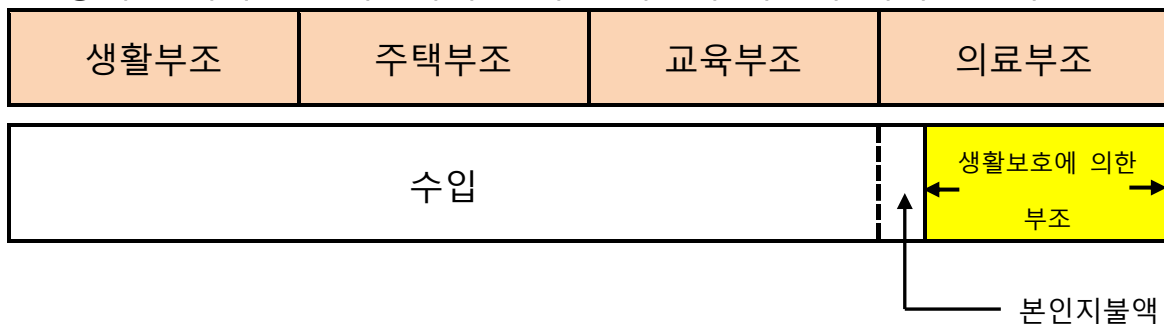


(2) 수입은 있지만 개호비, 의료비의 지불이 어려운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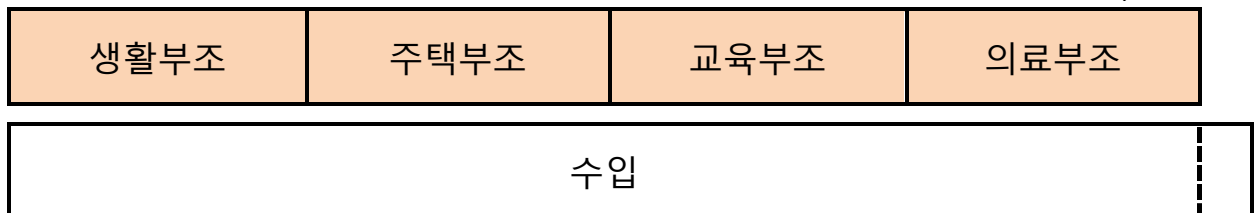
①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개호비 지불이 어려운 경우



②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지만 의료비 지불이 어려운 경우



2. 생활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수입이 최저생활비를 초과하기 때문에)



4. 생활보호의 종류

우리들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합니다. 생활보호에는 경비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조가 있습니다.

- 생활부조 의식, 광열수도비, 기타 일상 생활비,
임시 경비 (이사비용, 초중학교 입학 준비금 등)

가산에 대해서
• 임산부 가산 . . .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임산부가 있는세대 • 장애인 가산 . .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장애가 있는 분이 있는 세대 • 개호 시설 입소자 가산 . . . 개호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세대 • 재택 환자 가산 . . . 집에서 요양에 전념하고 있는 환자 (결핵 또는 3 개월 이상 치료를 요함)로서 일정한 상태에 있는 분이 있는 세대 • 방사선 장애인 가산 . . . 방사선에 의한 부상, 질병 환자가 있는 세대 • 아동 양육 가산 고등학교 등 종료 전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세대 • 개호 보험료 가산 . . . 65 세 이상의 개호보험 1 호 피보험자로 보험료를 보통으로 내고 있는 세대 • 모자 가산 . . . 한부모 세대로 원칙적으로 18 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세대 • 동계 가산 . . . 11 월부터 3 월 동계에 있어서 광열비 등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대에 적용

※ 가산 인정에는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구 담당원(케이스워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부조 집세나 지대
임시 경비 (이사를 위한 보증금, 갱신료, 주택 수리비 등)
- 교육부조 의무교육에 필요한 급식비나 학용품대금
임시경비 (통학에 필요한 비용이나 클럽 활동비 등)
- 개호부조 개호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

- 의료 부조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
임시 경비 (안경 · 코르셋 등의 비용, 통원 교통비 등)
- 출산 부조 출산비용
- 생업 부조 기능을 익히거나 일에 종사하기 위한 비용
고등학교 취학에 필요한 비용 (클럽 활동비 포함)
- 장제 부조 장례비용

※ 각 부조에는 각각 기준 (한도액) 이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미리 지구 상담원(케이스워커) 에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지불해 버린 경우, 지급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 충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부조 외에 다음과 같은 급여금이 있습니다.

- 취업 자립 급여금 취업으로 인해 생활보호를 중단한 분
- 진학 · 취업 준비 급여금 고등학교 졸업 등으로 인해, 대학 등
국가가 정한 교육 기관에 진학하는
분이나 취업으로 인해 생활보호를
중단할 예정인 분

5. 생활보호를 받게 될 경우에는 다음 수속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1) 생활보호를 받는 분이 정해진 수속 절차를 밟으면 다음의 요금 등이 감액 또는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시민세, 현민세, 고정자산세
- 수도요금
- 보육소(원) 의 보육료
- 국민연금 보험료
- NHK 방송 수신료
- 사립 고등학교 수업료
- 시영 묘지 관리비
- 대형 쓰레기 처리 수수료
- 지바시 증명 등 수수료 조례로 규정된 증명서
- JR 통근 정기권 요금

(2) 다음의 보험증, 의료비 조성 자격증은 사용할 수 없게 되니 교부를 받은 창구에 반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 피보험자증
- 후기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 장애인, 모자·부자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 자격증



카소리 패총 PR 대사
카소리ー누 (かそりーぬ)

6. 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고정 경비의 삭감 절차

매월 보호비로 가계를 잘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의 재검토 : 보상내용이나 계약상대의 재검토
- 통신비 재검토 : 계약내용 재검토나 저가 스마트폰으로의 전환
- 전기·가스의 재검토 : 계약내용, 서비스 내용, 이용요금의 재검토

※ 매월 지불에서 연지불로 바꿈으로써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내용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계관리에 불안을 느끼는 분이나 대학 등에 진학을 예정하는 자녀분이 있는 분은 가계 개선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7. 보장되는 것(권리)

- (1)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결정된 생활보호를 변경하는 일은 없습니다.
- (2) 생활보호에 의해 지급된 돈 등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3) 생활보호에 의해 지급된 돈이나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를 압류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8. 현금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센터 직원은 여러분의 현금과 통장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분으로부터 금전 관리를 의뢰받은 경우로, 보건복지센터에서 맡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관합니다. 이 경우에도 보건복지센터 안에서만 보관하며 외부에서는 보관할 수 없습니다.

현금 취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건복지센터 사찰 지도원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소리 패총 PR 대사
카소리-누 (かそりーぬ)

9. 지켜야 할 것(의무)

- (1)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2) 일할 수 있는 분은 능력에 따라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분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해 하루라도 빨리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4) 제대로 된 생활을 하면서 건강유지·증진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5) 생활보호로 지급된 돈은 잘 관리하여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6) 수입·지출·기타 생활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반드시 보건복지센터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적정한 생활보호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지도·지시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거나 (예를 들어 수입이나 가족 상황 등)、필요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보건복지센터의 지도·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생활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처벌받거나 지급된 돈 또는 그 돈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돌려주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이럴 때는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이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 급여 수입액이 바뀌었을 때
- 연금이나 은급 등을 수급 수속했을 때, 수급액이 바뀌었을 때
- 송금 금액이 바뀌었을 때
- 임시 수입이 있었을 때
토지·가옥 등의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동산의 매각금, 보험금, 위로금, 위자료, 복권당첨금, 국민건강보험 및 개호보험, 소득세 환급금 및 과납반환금, 인터넷 경매 및 플리마켓의 매출금(포인트), 동영상 배포 및 광고에 의한 수입 등

※ 수입신고는 금액에 관계없이, 소액이더라도, 자세하게·정확하게·빠르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이 없는 경우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정기적 (일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매월) 으로 수입신고서(급여 증명서·명세서·예금통장 등 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입금 (지인·친척에게서 빌린 돈,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 이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전자화폐, 상품을 매각해서 얻은 포인트 등도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상품 구입 시 얻은 포인트는 제외합니다.)

※ 올바르게 신고하면 공제 등의 취급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2) 세대원 중 일을 찾고 있는 분이나 취업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경우

- 가족 중에서 새롭게 일하게 된 경우 또는 직장을 바꿨을 때 (취업처·사회보험 유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을 그만두었을 때

(3) 생활상황이 바뀌었을 때

-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을 때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기관 등에 다니고 싶을 때 또는 질병이나 부상이 나았을 때, 입원하거나 퇴원했을 때
- 임신했을 때
- 세대 인원수가 바뀌었을 때 (전입·전출·출생·사망)
- 집세나 지대가 바뀌었을 때 (임대차계약서 및 집세·지대 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은행 등에서 생활보호금을 받고 있는 분이 통장이나 인감을 분실했을 때, 송금 계좌 등을 변경할 때
- 진학할 때
- 교통사고 등을 당했을 때
- 세대원이 해외에 갈 때 및 귀국했을 때 (해외 도향)
- 기타, 세대의 생활·생계 상황이 바뀌었을 때

(4) 올바르게 수입 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수입에 대한 공제	
기초 공제	취업 수입이 있는 경우 급여 총액에 따라 일정 금액이 수입에서 공제됩니다.
신규 취업 공제	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한 분이나 입원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대략 3 년 이상 동안 취업에 종사할 수 없었던 분이 계속적으로 취업에 종사해 수입을 얻기 위해 특별 경비를 필요로 할 경우, 일정 금액이 수입에서 공제됩니다.
20 세 미만 공제	20 세 미만인 분이 취업했을 경우 기초 공제 이외에 일정 금액이 수입에서 공제됩니다.
기타 필요 경비	사회 보험료, 소득세, 통근 교통비 등의 필요 경비가 공제됩니다.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수입	
사전에 보호 실시기관이 인정했을 경우 수입이 아닌 것으로 취급할 수 있으므로, 지구담당관(케이스워커)에게 상담해 주세요. •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부족분 • 수학여행비 • 학원료 • 대학 및 전문학교 입학금 등의 비용	

11. 이런 경우에는 보호로 받았던

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1)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신청이나 신고를 했을 때, 부정한 수단으로 생활보호를 받았을 때는 지급한 액수의 40%를 추가한 금액의 이하를 반환하거나, 3 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 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여러분의 수입 신고액이 정확한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보건복지센터에서는 여러분과 가족분이 제출한 수입 신고서의 내용이나 과세대장 (※) 에 기재된 수입액이 일치하고 있는지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 폐지 후에도 생활보호를 받고 있던 기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 과세대장 : 급여나 연금 등의 수입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대장 (급여 등의 지불주는 원천징수표와 같은 정보를 지자체에 보고)

- (2) 자산이나 청구권 등의 자력을 생활 보호 수급 중에 환급한 경우

- 생명보험이나 간이보험 등의 보험금이나 해약금을 받았을 때
- 연금이나 수당 등을 소급해서 받았을 때
- 토지·가옥·자동차·오토바이 등을 팔아 돈을 받았을 때
-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배상금을 받았을 때
- 기타 보건복지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 자력 (예금, 적금·생명보험·토지·가옥·교통사고의 배상금·수당이나 연금의 수급권) 이 있지만 당장은 활용할 수 없고 급박한 사정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생활보호를 개시(계속)합니다. 다만, 자력이 환급되는 등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때까지 지급한 보호비 (의료비·개호비 등을 포함) 를 소급해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세대의 자립 관점에서 일부가 반환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 의료기관 등에 다니고 싶을 때는



생활보호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진처에 대해서는 희망을 물은 후에 담당자가 안내※합니다. 진찰을 받기 전에 보건복지센터에서 「진찰 의뢰서」를 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가능한 한 인근 의료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동일 질병에 대해서는 한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습니다.

※ 마이넘버카드를 소지하신 분은 「마이나보험증」으로 이용등록해 두면 「진찰 의뢰서」가 필요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마이나보험증」으로 진찰받을 때나 「진료 의뢰서」를 받으러 오실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구 담당원 (케이스워커) 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립지원 의료수급자증, 지정 난치병 수급자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마이나보험증 등과 함께 제시하고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후발 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을 사용하게 됩니다.

◆ 휴일이나 야간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에는 「보호 (변경) 결정통지서」를 지참하여 진찰을 받고 다음 개청일에 신속하게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달에 다시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달의 첫 진찰 때에 마이나보험증 등으로 자격을 확인했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생활보호 수급이 개시되면 국민건강보험증 • 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은 사용할 수 없으니 반드시 반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술의 급부에 대하여

유도 정복 (타박상 또는 염좌의 환부를 치료하는 경우, 탈구 또는 골절환자에게 응급치료를 하는 경우는 의사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안마 마사지, 침, 뜸의 시술을 받는 경우는 의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술을 받을 경우에는 「급부 필요 여부 의견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지구 담당원 (케이스워커) 에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분이 수학여행이나 임간 • 임해 학교 등에 참가할 때

보건복지센터에서 「생활보호 수급 증명서」를 수령해서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 기간 중에 갑작스러운 병 등으로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경우에는 추후 신속하게 보건복지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3.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을 때는

(1)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분

개호보험의 「피보험자 (65 세 이상인 분 등)」와「피보험자 이외의 분(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40 세부터 64 세까지의 분으로 의료보험 미가입자)」으로 누워만 있거나 몸이 부자유롭기 때문에 식사, 입욕, 배변, 몸단장 등에 개호가 필요한 분입니다.

(2) 서비스 이용방법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기 위한 수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인 분과 피보험자 이외의 분(40 세부터 64 세까지의 분으로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수속 절차 방법이 다릅니다.

수속 절차 방법을 모를 경우나 수속 절차를 마쳤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구 담당원 (케이스워커) 에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인 분	피보험자 이외의 분
신청처	주민등록지의 개호보험 담당과	보호를 받고 있는 보건복지센터
유의사항 (※)	개호 서비스가 우선	장애인 시책의 서비스가 우선

※ 장애인 시책에 의한 서비스와 개호 서비스로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유의사항입니다.

◎개호보험의 피보험자란

○65 세 이상의 분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40 세부터 64 세까지의 분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한 분



14. 민생 위원회의 역할

민생 위원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면에서 어려운 일이나 걱정거리, 상담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상담해 주거나 필요한 조언, 지도를 해주는 분입니다.

상담 내용 등 비밀은 엄격히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생 위원은 보건복지센터의 협력기관으로 여러분과 보건복지센터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지구 담당원 (케이스워커) 의 역할

보건복지센터에서는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구 담당원 (케이스워커) 이 있습니다.

지구 담당원(케이스워커)은 생활보호가 개시되면 귀하의 세대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택을 방문합니다. 그 때는 일상 생활 상황이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묻고 귀하나 가족분의 상황이나 희망에 따른 지원 방침을 세운 다음 지원합니다. 생활면에서의 어려움이나 걱정거리, 생활보호의 구조 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지구 담당원(케이스워커)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내용을 업무 외에 이야기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할 수 있는 분에게는 취업 지원 상담원 등이 취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도 있으므로, 언제든지 부담없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6. 요보호 세대 대상 부동산 담보형 생활자금 대출제도에 대해

일정한 거주용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 주거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피보호 고령자 세대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제도의 이용이 생활보호를 우선합니다.

요보호 세대 대상 부동산 담보형 생활자금 대출 제도의 대상은 다음 ①②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①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 및 동거의 배우자가 65 세 이상일 것 .
- ②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이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동거하는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는 거주용 부동산의 평가액이 대략 500 만엔 이상일 것.

다만, 그 거주용 부동산에 임차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7. 기타

- 생활보호비는 예금, 적금 계좌가 없는 경우나 보건복지센터의 창구에서 지불할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매월 1 일경에 지정 금융기관으로 입금됩니다. (※창구에서 지불을 받으실 경우에는 인감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호법은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류자격 등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국적인 분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에 준하는 취급을 합니다.
- 폭력단원이거나 폭력단 활동에 연루되었던 경우에는 보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보호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생활보호를 수급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보호비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18. 구 사회원호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

일이나 진학 등 향후의 일을 함께 생각해 가는 전문 위원도 있습니다. 상담내용을 업무 외에 이야기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지구 담당원(케이스워커)이나 취업 지원원, 자립·취업 서포터 센터※가 함께 일을 찾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곧바로 일을 하기 어려운 분이나 불안한 분에 대해서는, 먼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스킬을 익히기 위한 지원이나 취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헬로워크 지바 상설 창구(주오구, 하나미가와구, 이나게구, 와카바구 보건복지센터 안에 있습니다)

• 생활보호세대 등 학습·생활지원사업·진로상담

가정환경에 의해서 배움이 좌우되지 않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 각 구 보건복지센터 등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지원외에도 생활 습관이나 육성 환경 개선에 관한 생활지원, 중학교를 졸업한 분을 대상으로 진학 및 취업 등의 진로에 관한 상담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가게 개선 지원

생활보호에서 자립을 목표로 가게 개선을 희망하는 세대나 자녀가 진학을 희망하는 세대 등을 대상으로, 생활비의 변동이나 진학을 위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구 담당원(케이스워커)와 가게 개선 지원원이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계획을 세워나가는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건강관리 지원

생활습관병의 중증화 예방을 목적으로, 건강관리 지원원이 치료중이지만 경과 불량인 분 및 의료기관에서 진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만 진찰을 받지 않은 분에 대해서 건강문제나 의료 과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견지에서 조언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 생활보호제도의 원칙

생활보호제도는 세대원 전원이 이용할 수 있는 자산, 능력, 기타 모든 것을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1) 능력의 활용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입을 창출하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구 담당원(케이스워커)이 일을 찾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일하기 어려운 분은 의사 등의 의견을 참고해 그 분에 맞는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2) 자산의 활용에 대해서

여러분 세대의 자산 (토지 • 가옥 • 자동차 • 귀금속 • 예금, 적금 • 생명보험 등) 중에서 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것은 매각 등의 처분을 해 세대의 생활비로 충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양의무에 대해서

친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 자녀 •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송금이나 양육비 등의 지원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보호에 우선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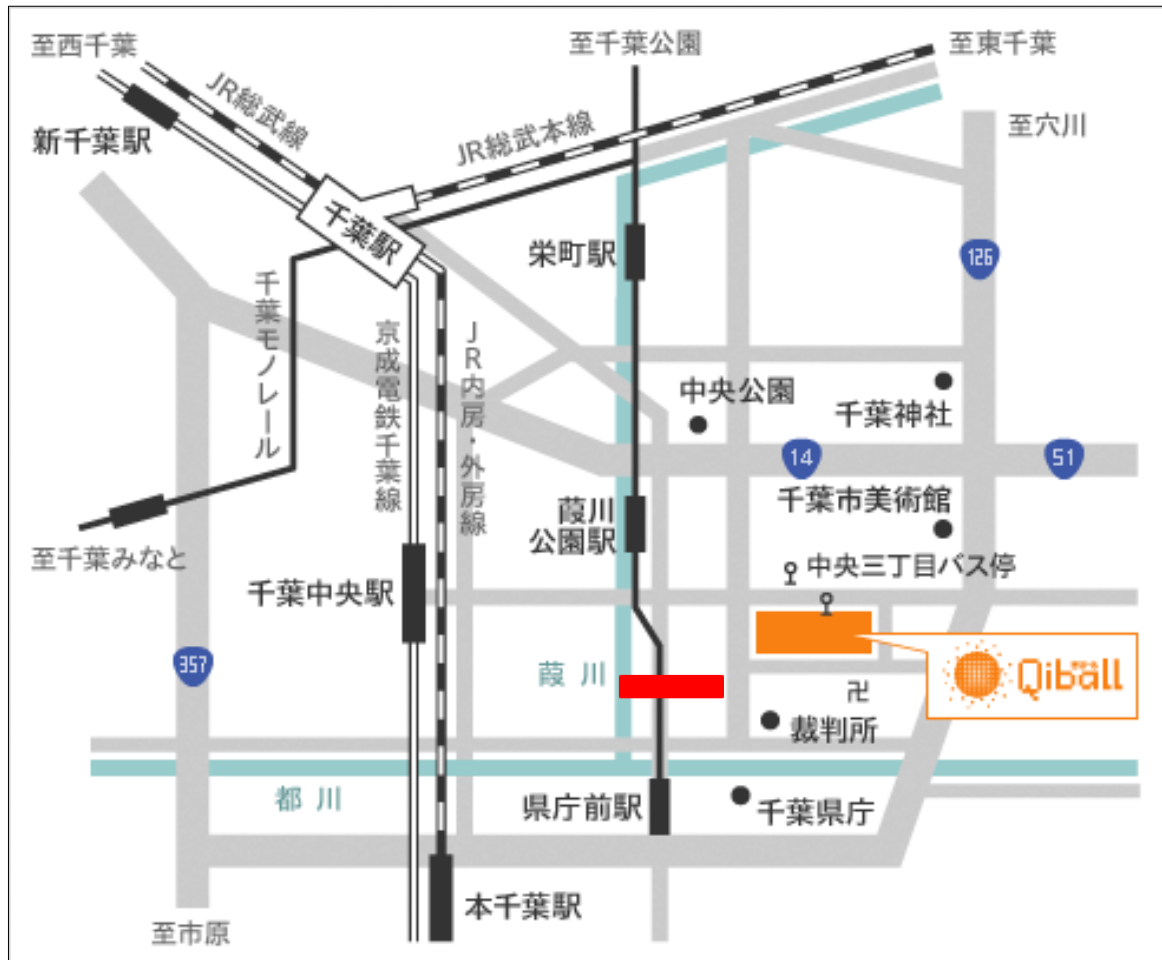
또한 보건복지센터에서는 친족에 대해서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조회하지만 DV나 학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려하기 때문에, 그때는 지구 담당원(케이스워커)에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른 법 • 다른 시책의 활용에 대해서

연금이나 각종 수당 등 생활보호 이외의 제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수속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센터 일람

중앙 보건복지센터 (中央保健福祉センター)
ちゅうおうほけんふくし



〒260-8511

주오구 주오 4-5-1 (中央区中央4丁目5番1号) Qiball (키볼) 14 층
ちゅうおうくちゅうおう ちようめ ばん ごう

사회원호제 1 과

(보호제 1 반) 043-221-2154
(보호제 2 반) 043-221-2155
(보호제 3 반) 043-221-2156
(보호제 4 반) 043-221-2550

사회원호제 2 과

(보호제 1 반) 043-221-2066
(보호제 2 반) 043-221-2067
(보호제 3 반) 043-221-2068
(보호제 4 반) 043-221-2017
(보호제 5 반) 043-221-2174

하나미가와 보건복지센터 (花見川保健福祉センター)
はなみがわほけんふくし



〒262-8733

하나미가와구 미즈호 1-1 (花見川区瑞穂1丁目1番地)
はなみがわくみずほ 1 ちょうめ ばんち

(하나미가와 구청내)

사회원호과

(보호제 1 반) 043-275-6471

(보호제 2 반) 043-275-6420

(보호제 3 반) 043-275-6490

(보호제 4 반) 043-275-0091

(보호제 5 반) 043-275-6189

이나게 보건복지센터 (稲毛保健福祉センター)
いなげほけんふく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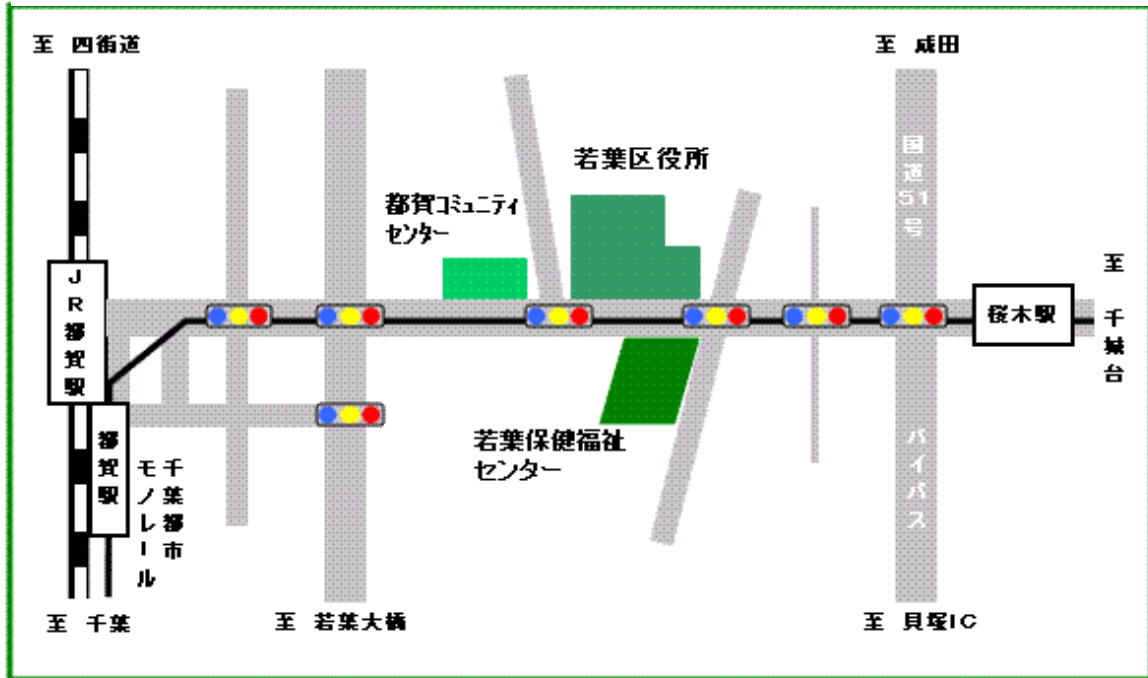
〒263-8550

이나게구 아나가와 4-12-4 (稲毛区穴川4丁目12番4号)
いなげくあながわ ちょうめ ばん ごう

사회원호과

- (보호제 1 반) 043-284-6136
- (보호제 2 반) 043-284-6142
- (보호제 3 반) 043-284-6143
- (보호제 4 반) 043-284-6143
- (보호제 5 반) 043-284-6143

와카바 보건복지센터 (若葉保健福祉センター)
わかばほけんふくし



〒264-8550

와카바구 가이즈카 2-19-1 (若葉区貝塚2丁目19番1号)
わかばくかいづか ちょうめ ばん ごう

사회원호제 1 과

(보호제 1 반) 043-233-8156
 (보호제 2 반) 043-233-8157
 (보호제 3 반) 043-233-8208
 (보호제 4 반) 043-233-5305

사회원호제 2 과

(보호제 1 반) 043-233-8158
 (보호제 2 반) 043-233-8149
 (보호제 3 반) 043-233-8199
 (보호제 4 반) 043-233-8180

미도리 보건복지센터 (緑保健福祉センター)
みどりほけんふくし



〒266-8550

미도리구 가마토리초 226-1 (緑区鎌取町226番地1)
みどりくかまとりちょう ばんち

사회원호과

(보호제 1 반) 043-292-8153

(보호제 2 반) 043-292-8152

(보호제 3 반) 043-292-8136

미하마 보건복지센터 (みはまほけんふくし 美浜保健福祉センター)



261-8581

미하마구 마사고 5-15-2 (美浜区真砂5丁目15番2号)

사회원호과

(보호제 1 과) 043-270-1223

(보호제 2 과) 043-270-3149